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4. 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발의일자 : 2008년 3월 25일
- 나. 발 의 자 : 조길형 의원 외 11인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28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년 3월 31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 설명자 : 조길형 의원)

가. 제 정 이 유

- 영등포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구청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하고,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음(안 제3조)
-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(안 제4조)
-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, 이 외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(안 제5조)
-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

결정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함(안 제6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안을 살펴보면
-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하고,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,
-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,
- 안 제5조에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, 이 외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,
- 안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호	133
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조길형의원외 11인

1. 제정이유

- 영등포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구청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하고,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음(안제3조)
-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(안제4조)
-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, 이외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(안제5조)
-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 함(안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, 제18조 및 제66조
- 예산조치 :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
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보장구”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·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·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.
3. “지원대상자”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(“전동휠체어”를 포함한다)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4. “전동기기”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

제3조(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)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)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(이하 “지정수리업체”라 한다)를 이용한 경우에만 하여 지원한다.

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,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.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,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.

제6조(수리비용 지원절차)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,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1.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
2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

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.

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,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

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연번: 동명 08-01~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

장애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성 별	남 · 여
	주 소			전 화 번 호		
	장애명			장 애 등 급	급	
수 급 유 형	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				
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		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스쿠터 ※해당 유형에 체크						
비 고						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확인자 : 동 주민센터

담당 (서명 또는 인)

(○ ○ 수리업체장) 귀하

※연번의 동명표기는 예) 영등포1동은 영일(두자만)로 표기

[별지 제3호서식]

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

업체명 :

기간 : -

연번	수리 의뢰자 인적사항					수리비 청구내역				
	성명	생년월일	주소	장애종류,등급	연락처	보장구유형	수리내역	수급유형	수리비	신청금액
								수급자, 차상위, 일반		

